##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협약서

중앙행정기관명			보건복지부	전문기관명	한국보건산업진흥원			
사업명			연구중심병원 육성 R&D					
총괄연구개발명			5차 산업혁명 초개인화 H·I 미래기술 기반, 콰트로 상생 플랫폼 구축					
연구개발과제명			R&BD Bio-Health Park를 통한 신속 실증 플랫폼 구축					
고그버승			보건복지부공고 제2020-936호	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	HR21C1003000021			
<u> </u>	공고번호		보신녹시구공포 제2020-950로 	연구개발과제번호	HR21C1003030021			
주관연구개발기관명			아주대학교병원	연구책임자	정재연			
	전체		2021.07.01 - 2029.12.31 (102개월)					
연구개발기간	단 계	1	2021.07.01 - 2023.12.31 (30개월)					
		2	2024.01.01 - 2026.12.31 (36개월)					
	.,	3	2027.01.01 - 2029.12.31 (36개월)					

연구개발비 (단위: 천원)		정부지원	기관부담 연구개발비		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				ळी चौ			
		연구개발비			지방자치단체		기타()		합계			연구개발비 외
		현금	현금	현물	현금	현물	현금	현물	현금	현물	합계	지원금
총계		2,980,000	0	0	0	0	1,037,000	1,241,000	4,017,000	1,241,000	5,258,000	0
- '	1년차(21.07~21.12)	200,000	0	0	0	0	61,000	73,000	261,000	73,000	334,000	0
	2년차(22.01~22.12)	40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522,000	146,000	668,000	0
	3년차(23.01~23.12)	40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522,000	146,000	668,000	0
- '	1년차(24.01~24.12)	36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82,000	146,000	628,000	0
	2년차(25.01~25.12)	36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82,000	146,000	628,000	0
	3년차(26.01~26.12)	36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82,000	146,000	628,000	0
3단계	1년차(27.01~27.12)	30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22,000	146,000	568,000	0
	2년차(28.01~28.12)	30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22,000	146,000	568,000	0
	3년차(29.01~29.12)	300,000	0	0	0	0	122,000	146,000	422,000	146,000	568,000	0

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.

2021년 07월 12일

연구책임자 소속 : 아주대학교의료원 성명 : 정재연

[협약 당사자]

전문기관의 장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(대표자) 권순만

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: 아주대학교병원 (대표자) 한상욱

첨부서류

1. 연구개발계획서(협약용) 1부

2.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



## <협약서 세부조건>

※ 아래의 내용은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등 관계법령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 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"R&BD Bio-Health Park를 통한 신속 실증 플랫폼 구축"(연구개발과제번호: HR21C1003030021)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, 중앙행정기관의 권한·의무, 전문기관의 권한·의무,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·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과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이하 '영'이라 한다)을 따른다.

제3조(연구개발계획서)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.

제4조(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)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
- 2.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
- 3.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, 정산
- 4.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, 특별평가, 최종평가,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
- 5.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
- 6.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7.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
- 8. 연구개발정보의 수집, 관리 및 처리
- 9.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
- 10. 연구개발 지원체계, 확립 및 평가, 연구개발 관련 교육·훈련
- 11.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
- 12.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
- 1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,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

제5조(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)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)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
- 2.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
- 3.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·조정 및 작성 총괄
- 4.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
- 5.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
- 6.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,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,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·보고
- 7.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총괄
- 8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총괄
- 9. 기술료의 징수·사용,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
- 10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

- 11.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
- 12.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
- 13. 연구시설 · 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- 14.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
- 15. 연구노트의 작성 ·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
- 16.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
-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
- 2.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·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
-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
- 2.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
- 3.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
- 4.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
- 5.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,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,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·보고
- 6. 연구개발비의 사용 ·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
- 7.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 · 단계보고서 ·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8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
- 9. 기술료의 징수·사용,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
- 10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
- 11.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
- 12.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
- 13. 연구시설 · 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- 14.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
- 15. 연구노트의 작성 ·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
- 16.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
-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
- 2.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
- 3.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
- 4.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,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,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·보고
- 5. 연구개발비의 사용 ·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
- 6.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·단계보고서·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7. 기술료의 징수·사용,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
- 8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
- 9.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
- 10.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
- 11. 연구시설·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
- 12.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
- 13. 연구노트의 작성 ·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
- 14.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

제7조(연구자의 권리와 의무)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.
- 2.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.
-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.

제9조(협약의 해약)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.

제10조(연구개발결과 보고)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, 최종보고서,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.

제11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)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,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,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·방법·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, 최종 평가,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평가에 따른 조치) 단계평가, 최종평가,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 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.

제13조(연구개발비 부담·지급·사용·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·정산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차별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.
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입금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·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금의 지급 횟수, 시기, 지급 조건·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1.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
- 2. 정부의 예산 사정,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 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3.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
- 4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5.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(이하'연구개발비카드'라 한다)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.
- 1.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 또는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7조의3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보건의료기술 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
- 2.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
- 2.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,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
- 3.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

회수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·지급·사용·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·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,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. 제15조(연구개발성과의 관리)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

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·공개)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,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- 1.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: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,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, 연구개발과제번호, 연구개발과제명,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(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,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)
- 2.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: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, 국가연구개발사업명, 연구개발과제번호, 연구개발과제명,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(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,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)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
- 3.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: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,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, 국가연구개발사업명
-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(이하 '개량성과'라 한다)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.
-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·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·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·제35조에 따른다. 제17조(기술료 등의 징수·납부·사용) ① 기술료의 징수·감면·사용,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·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,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(단위: %)

구분	매출액발생	매출액발생	매출액발생	매출액발생	매출액발생	
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	
기술기여도	~75	~75	~75	~75	~75	

\* 기술기여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으로 납부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의 장이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
제18조(연구시설·장비의 등록·관리) 연구시설·장비의 등록·관리에 관하여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(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, 관계 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-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,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
- 1.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
- 2.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
- 3.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
-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·제20조, 영 제42조·제43조와 법 제19조·제20조 또는 영 제42조·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0조(연구실 등의 안전관리) ① 연구개발기관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 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1조(보안관리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.
- 제22조(연구지원체계 확립 등)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·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영 제51조·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·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3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)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제31조부터 제34조까지, 영 제56조·제57조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(이하 '규칙'이라 한다)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·조치·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

제24조(연구노트 작성·관리) 연구노트 작성·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, 영 제65조제1항 및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」에 따른다.

제25조(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,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.

제26조(관계법령등의 준수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, 영, 규칙, 법·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,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(이하'관계법령등'이라 한다)을 준수해야 한다.

- ② 법, 영, 규칙, 법·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,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,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8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지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지가 송달된 때부터 이 협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본다.

- 1. 관계법령등이 제 · 개정된 경우
- 2. 그 밖에 이 협약을 규율하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

제27조(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,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·훈련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.

- 1. 연구개발과제 기획 관리 평가
- 2.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·활용
- 3.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
- 4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- 5.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
- 6.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
- 7.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때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- ④ 연구책임자가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,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